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0.11.26>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제14조제2항 관련)

1. 기술·기능 분야

자격 등급	검정 방법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구술형 면접시험
기능장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기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산업기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기능사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시행할 수 있다.

2. 서비스 분야

자격 등급	검정 방법	
	필기시험	실기시험
전체 등급	객관식	작업형 실기시험

-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실기시험만 실시하거나,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